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2106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승룡, 임호택

피 고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임호택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이상준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 선고 2021. 1. 14.

주 문

1.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가. C와 피고 B 사이에 2018. 7.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나. 피고 B은 C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12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8. 10.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01,079,043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청구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C와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잔액	보증기한	채권은행
2011. 10. 7.	F	80,000,000	2019. 9. 27.	G은행

나. C는 원고의 보증에 기하여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1. 1. 당좌거래부도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G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4. 2. 대출원리금 81,960,767원(80,000,000원+1,960,7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는 2018. 10. 1.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525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7.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470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별지목록 2. 기재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각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A 주식회사는 101,079,043원의, 피고 B은 120,000,000원의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마.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C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 적극재산

적극재산의 표시	가액	비 고(입증자료)
별지 목록 1. 부동산	332,000,000원	갑 제12호증의 1 (감정평가서)
별지 목록 2. 부동산	500,000,000원	갑 제12호증의 2 (감정평가서)
지게차(H)	14,100,000원	갑 제14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승용차(그랜저 2011년)	10,110,000원	갑 제15호증의 1 (I 중고차시세)
화물차(봉고3 2013년)	9,900,000원	갑 제15호증의 2 (I 중고차시세)
보험금(J)	2,587,200원	을 가2호증
각 공사대금채권	액수미상	
합 계	868,697,200원	

(2) 소극재산

채 권 자	금 액	비 고(입증자료)
원고	80,000,000원	
G은행	534,321,741원 ¹⁾	사실조회회신(2020. 8. 5.자)
(주)K	84,108,264원	사실조회회신(2020. 8. 26.자)
L	11,150,115원	사실조회회신(2020. 9. 15.자)
M은행	68,123,676원	사실조회회신(2020. 7. 24.자)
N	3,065,753원	사실조회회신(2020. 8. 5.자)
O	14,100,000원	갑 제14호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 A	100,000,000원	을가 제1호증의 12)
피고 B	115,000,000원	을나 제1, 2, 5호증 (차용증, 통장사본)
합 계	1,009,869,54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을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수익자로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C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가 보증사고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형성되어 있었고, 각 근저당권 설정 무렵 이미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C와 피고들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후 1개월 이내에 C의 당좌거래부도가 발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C의 채무초과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가 제2호증에 의하면 C가 다수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을가 제2호증의 채권 계산시점이 2019. 6.로써각 근저당권설정 이후 시점이고, C의 진술 외에 위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이 C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는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다수의 물품대금 채무 역시 부담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B의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2017년도에 발생한 것임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 되어 있는 날에 실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된 날을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피고로부터 사업목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을 신규로 설정해 주었고 위 대여금이 실제로 물품대금 조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로서는 사업이 적자인 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물품대금을 변제하면 미수 채권 등의 존재로 인하여 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는 G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09,000,000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에도 2018. 10. 말까지 C와 사이에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주식회사 A은 C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일부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실질적으로 경영주가 동일한 P에 지급되었으므로 위 돈은 사실상 자신의 채권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상 필요한

신규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P 역시 C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P과 피고 주식회사 A의 사업주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금이 대환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는 당시 여건상 별지 목록 2.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B도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을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B의 선의 항변

피고 B은 C에게 2017. 7. 31.경 3,000만 원, 2017. 12.경까지 8,5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대여한 상태에서 C로부터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종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인바, 사돈인 C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마다 C와 사위를 믿고 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신용의 재정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7.경에 1억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 C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게 된 시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던 점, 각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8,500만 원 부분은 현금으로 대여하여 그 실질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 B은 2019. 8. 12.자 답변서에서 자신이 C에게 3,000만 원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었던 점, C와 피고 B은 사돈관계로 C의 재정상태를 알기 어려웠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C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12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C에 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1) 조회 결과 중 원고가 인정하고, 피고들도 사실상 다툼 없는 금액

2) 원고는 갑 제8호증의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피고 A의 채권이 229,407,750원에 이른다고 하나, 이는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발생한 채권까지 합한 금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A의 채권이 1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